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41
----------	------

2017년 8월 30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7월 27일, 한명희 의원 외 12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7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한명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안 제1조~제6조, 안 제8조~제9조, 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비닐봉투 사용 현황

- 현재 대규모 점포, 도·소매 사업장(면적 33㎡이상)에서 비닐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닐봉투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음.

〈비닐봉투 사용량 추이〉

(단위: 억개)

연도	2003년	2008년	2013년	2015년	비 고
사용량	125	147	191	216	

또한, 최근¹⁾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 조사결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속 내용물 중 비닐·플라스틱류가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닐봉투 사용량 추이〉

(단위: %)

계	종이류	비닐·플라스틱류	섬유·피혁류	음식물	불연물, 기타
100	36.6	17.6	14.5	8.9	22.4

1) '17.1월 ~ 6월

2) 폐현수막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등

- 2016년 기준 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약 77만장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약 30%는 장바구니, 마대자루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처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서울시는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정비업협회, 재활용업체 간 3자 간담회('16.8월)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2) ('17.5월) 등을 통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소개하고 사용을 적극 요청 해 오고 있음.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 현황〉

2017년 현재 서울시 소재 폐현수막 등 재활용 업체는 녹색발전소, 터치

2) 청소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 낙엽 마대자루, 재활용정거장 마대자루, 수방용 모래주머니로 이용
환경과 : 자동차 정비공장, 세차장, 공사장 등에서 폐기물 마대자루로 이용

포곳, 대길사회복지단, 도봉실천단이 있으며, 강서, 구로, 서대문구 등 11개 자치구에서만 재활용 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다른 자치구로의 사용 확대가 요망된다 할 것임.

-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6.7.7)으로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주어졌으며, 이에 서울시는 거리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와 합동 점검·단속하는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을 운영('17.7.12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시의 불법 현수막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적발된 불법 현수막 중 약 70%가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으로 파악³⁾되고 있는 바, 불법 현수막 근절을 통한 폐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⁴⁾과 보다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임.

3)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 제공(안 제10조제3항 신설)

-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사용은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⁵⁾에 따른 “폐기물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과 부합한다 할 것이며,

안 제10조제3항 신설을 통해 서울시가 폐현수막 등으로 제작한 장바구니

3) KBS 뉴스 보도('17.8.11)

4) 민간단체나 기업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구청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은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임.

5) 제10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활성화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재활용 장바구니가 폐현수막뿐만 아니라 펠트⁶⁾ 등으로도 제작되고 있는 바,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3항 중 “폐현수막”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더불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재활용 장바구니(소형)의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디자인 및 품질 등이 떨어져 이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바구니 디자인 및 품질 개선도 필요할 것임.

-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의 제공”에 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임(선관위 질의회신, '17.8.7).

4)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6) 양모 또는 양모와 다른 섬유와의 혼합 섬유를 가온 압축하에서 문질러 양모의 축융성에 의해 섬유가 얽혀서 된 피륙을 말하며, 페페트병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하기도 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 폐현수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제시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41
----------	------------

제안년월일 : 2017년 8월 30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 폐현수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 폐현수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제시될 수 있도록 “폐현수막”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수정함(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폐현수막”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u>」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폐기물관리법</u>」, 같은 ----- ----- ----- -----.</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u>의하여</u>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u>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 ----- <u>따라</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법 제5조제1항에 따른</u> ----- -----.</p>	<p>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개정안과 같음)</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생략)</p> <p>② <u>2이상의</u> 자치구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u>제159조의 규정에 의한</u>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2 이상의</u> ----- ----- ----- <u>제159조에 따른</u> ----- -----.</p>	<p>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u>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u> 시가 반입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u>법 제6조에 따라</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u>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u>법 제14조제2항에 따라</u>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u>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u>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p>	<p>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 <u>법 제14조제5항에 따라</u> ----- ----- ----- ----- ----- -----.</p>	<p>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재활용 가능품·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u>사업장일반폐기물</u>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u>제3호가목(2)의</u>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사업장일반폐기물</u> 중 ----- ---- <u>제3호가목(2)의</u> - -----</p>	<p>② ----- -----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③ (생략)</p> <p>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u>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u>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u>연1회</u>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u>법 제39조에 따라</u> ----- ----- <u>연 1회</u> ----- ----- -----</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개정안과 같음)</p>
<p>1. ~ 4. (생략)</p> <p>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생략)</p> <p>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u>정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정한다.</u></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생략)</p>	<p>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u>등</u>,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u>시행령</u> 별표 8과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③ <u>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u></p> <p>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 ----- ----- <u>등</u> ----- ----- ----- -----.</p> <p>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 ----- 「<u>폐기물관리법 시행령</u>」 ----- ----- ----- -----.</p>	<p>③ <u>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u></p> <p>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과태료 부과 등)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같은”을 “「폐기물관리법」, 같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이상의”을 “2 이상의”으로,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중”을 “사업장일반 폐기물 중”으로, “제3호 가목(2)의”을 “제3호가목(2)의”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중 “등,”을 “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제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 능품·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2)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p> <p>③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 -----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 ----- ----- ----- ----- -----.</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 ----- 제3호가목 (2)의 -----</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별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별 제39조에 따라 ----- ----- 연 1회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생략)</p> <p>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정한다.</p>
<p>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p>
<p>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등,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 ----- 등 ----- ----- -----.</p>
<p>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p>